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19일

발의자 : 정윤주, 이용진, 양순임, 임현주,
오중균, 진선아, 고영옥, 권영애

1. 제안이유

-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까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,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임기 확대(안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자치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5. 19. ~ 2023. 5. 24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, “있으나,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도 포함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 의 임기는 <u>1년</u> 으로 하되,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<u>있으나, 임기 종 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.</u> 다만,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 <u>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